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5. 12. 9.(화)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안 건 : 6건

1.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
2.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3.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5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8

20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49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시행이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3년 달성군의회 제309회 제2차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총 37개소에 대한 보고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이 되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30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회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로 총 37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37개소)

(2025. 10. 31. 기준)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총 계		37	82,786	
도 로	계	33	35,391	
	중 로	1	7,911	논공읍 1개소
	소 로	32	27,480	화원읍 1개소 논공읍 3개소 다사읍 5개소 옥포읍 6개소 가창면 11개소 하빈면 6개소
주차장	노외주차장	1	213	안박실주차장(가창)
공 원	계	3	47,182	
	소공원	1	362	안박실공원(가창)
	문화공원	2	46,820	도동공원(구지) 굿밭골공원(유가)

○ 이 중 ▲관리번호 2번 중로3-313 논공읍 삼리리 506-7번지에서 논공읍 위천리 158-5번지에 이르는 폭12m, 연장 623m 도로, ▲관리번호 3번 소로3-논76 논공읍 위천리 136-8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39번지에 이르는 폭6m, 연장39m 도로, ▲관리번호 4번 소로2-논108 논공읍 위천리 142-10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40번지에 이르는 폭8m, 연장 325m 도로, ▲관리번호 117번 소로2-논107 논공읍 삼리리 517-3번지에서 논공읍 삼리리 516-16번지에 이르는 폭8m, 연장 305m 도로 이상 4개소의 도로 시설은 광주대구선 고속국도 12호 논공휴게소(대구방향) 남측과 동측에 위치하였으며, 2005. 12. 29. 시설 결정을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5년 실효 예정입니다.

- 그 외 29개소의 도로와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는 취락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결정된 시설 또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로 시설 결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167개소, 주차장 30개소, 궤도 1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12개소, 연구시설 1개소로 총 230개소입니다.
-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2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미집행시설 총 230개소 중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에 183개소, 1,027억 원, 2029년부터 2031년 이후까지 2단계에 47개소, 4,59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미집행 시설의 총 사업비는 5,617억 원입니다.

2026년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단위 : 천㎡, 억 원)

구분	합 계			2026년 ~ 2028년 (1단계)			2029년 ~ 2031년 이후 (2단계)			비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총 계	230	780	5,617	182	266	1,027	48	514	4,590	
도 로	167	263	1,032	127	177	671	40	85	361	
주 차 장	30	16	67	30	16	67	-	-	-	
궤 도	1	47	301	-	-	-	1	47	301	비슬산 케이블카
공 원	19	64	368	16	16	213	3	47	155	
녹 지	12	58	86	10	56	76	2	3	10	
연구시설	1	332	3,763	-	-	-	1	332	3,763	DGIST (국·시비)

- 미집행시설 총 230개소에 대한 준치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준치 결정함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사업의 예산 편성, 투자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0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구 분	소 재 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옥포읍 옥포로 3	면적 66㎡	4명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화원읍 비슬로 520길 17-1 (4층)	면적 304㎡	4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기획·운영

- 도시재생 거점시설(공동이용시설) 관리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사무국장	선임연구원	연구원
달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1명	1명	2명
천내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명	1명	1명	2명

○ 위탁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0.1점)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은 주민 조직화, 도시재생 계획 실행, 국비 공모 준비 등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사업 추진에 따른 노하우가 유지되어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공백·혼선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현장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현 위탁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평균 80.1점으로 위탁성과도 적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주민 참여, 공동체 형성 등의 정성적 요소가 많아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우므로,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 측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75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28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2월 2일

2. 제안사유

- 2026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금3,943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기관운영비: 금1,238백만 원
 - (재)달성문화재단 자체사업비: 금2,705백만 원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 재산 및 재정지원)

5.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수탁받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026년 출연금은 총 3,943백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요구 내역

(단위: 백 만원)

구 분	사업기간	요구액
계		3,943
인력운영비	1~12월	617
기본경비	1~12월	621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400
달성 100대 피아노(시비)	9월	100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9~10월	550
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	1~12월	200
하빈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12월	125
예술자치구역	1~12월	150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12월	150
달성 스토리텔링	1~12월	160
YES! 키즈존	5~10월	350
문화기획지원	1~12월	240
달성문화교차로	1~12월	200
참꽃갤러리 운영	1~12월	80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확대, 문화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출연이 필수적이므로 본 출연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출연금은 지역문화 발전과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재정 지원인 만큼,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의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특히 사업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복지 확대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조직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출연금 사용 내역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1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문화회관	현풍읍 현풍동로 92	• 대지: 10,015㎡ • 건축물: 2,172㎡ (지하1층, 지상2층)	6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달성군 문화회관 관리·운영
 - 회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회관 건물 및 부속시설물 일체의 유지, 보수, 환경정비 및 관

리 전반에 관한 사항

- 회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회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와 "원장"이 협의한 사항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문화원장	사무국장	관리담당	간 사
인원	6명	1명	1명	2명	2명

- 위탁기간: 3년(2026. 1. 1. ~ 2028. 12. 3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 성과평가 결과: **적정(평균 80.5점)**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5. 검토의견

- 달성군 문화회관의 운영은 군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기획, 무대기술, 시설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써 해당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행 수탁기관인 달성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문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1994년 설립 한 이래 지역문화정책과 연계된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본 문화회관의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재계약)은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회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현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평균 80.5점으로 성과도 양호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문화회관의 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는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질적 만족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문화회관은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지역 문화생태계 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지표와 주민 참여도 관련 지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2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재계약)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수
달성 문화도시센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7층	322.79㎡	11명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달성 문화도시센터 운영
 - 문화도시 구성에 관한 업무
 -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 그 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도시센터 관리재산
- 권역별 커뮤니티 공간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소재지		구분	면적(㎡)	
화원읍 천내리	454-4	토지(대지)	618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화원권역)
		건물	1185.78	
다사읍 매곡리	719-19	토지(대지)	295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점공간(다사·하빈권역)
		건물	202.54	

○ 조직 및 구성

구분	계	센터장	팀장	매니저	공무원(파견)
인원	11명	1명	2명	7명	1명

- 위탁기간: 2년(2026. 3. 1. ~ 2028. 2. 29.)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 성과평가: 문화도시 대상 2023년도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수도시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라 별도평가하는 위탁사무에 해당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5. 검토의견

-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문화 자원 발굴, 주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등 전문적인 기획과 운영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의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행 수탁기관인 (재)달성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의 추진과 제4차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이해도, 사업관리 역량, 운영 노하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단체, 예술가, 교육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사업 추진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도시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 성과 평가 결과 ‘2023년 우수도시’, ‘2024년 우수도시’로 성과도 우수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753호
- 발 의 일: 2025년 11월 7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6일

2. 제안사유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없으며,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실효성이 없음에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를 폐지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종교인 상호간 상생과 화합을 바탕으로 달성군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달성군수가 제출하여 제23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15. 11. 10. 시행된 조례입니다.
-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내 불교, 기독교 및 천주교의 각 종단 또는 그 신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의 정의와 협의회가 추진하는 각 종교인의 행사, 사회교육사업, 사회복지 및 각종 봉사사업,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보호사업 등 달성군민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조례 시행 후 2016년 9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평가 결과 지원 중단 판정이 나왔으며,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종교인 지역발전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종교인 지역발전협의회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교부액	집행액	사업내용
2014	21,000	20,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절 행사(달걀 나누기), • 성탄 트리 점등식(팸플릿 제작 등) • 종교인 음악회(10. 30.)
2015	21,000	1,2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절 행사(달걀 나누기), • 연등 점등식 행사 지원